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51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5월 19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 5. 19.~ 2023. 6. 2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윤제원	1978.○.08.	0178200274100005936 0178200274100005937	₩35,431,200	제주 제주시 연삼로
2	이이칠사랑대리 운전(박래곤)	1966.○.05.	0178200274100006028	₩6,562,5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
3	고재관	1964.○.29.	0178220274100003689	₩18,540,000	서울 강북구 송인로 5길
4	최호준	1985.○.23.	0178210274100004666	₩4,087,500	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 7길
5	박성호	1971.○.04.	0178220274100003945	₩3,862,500	광주 북구 연양로
6	주식회사 클린애드	200111- 0392278	0178210274100000953	₩10,425,000	광주 서구 상무시민로 103
7	이정호	1967.○.19.	0178230274100000205	₩721,000	광주 북구 서하로 194 번길
8	(유)신흥투자개발	205714- 0011247	0178210274100001430	₩5,100,000	광주 서구 상무대로 945
9	송선영	1977.○.09.	0178230274100001341	₩3,750,000	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
10	이영민	1973.○.18.	0178200274100006013	₩8,505,000	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5 번길
11	방인욱	1974.○.27.	0178210274100003322	₩10,620,000	광주 광산구 소촌로 86 번길
12	(주)센트럴아이시티	200111- 0471973	0178200274100007243 0178200274100006014	₩30,907,500	광주 동구 밤실로 54
13	최미향	1976.○.05.	0178210274100000380 0178200274100004247	₩12,657,500	광주 서구 내방로 241 번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4	변형순	1947.○.06.	0178200274100004098	₩12,225,000	광주 서구 월산로
15	정은심	1969.○.25.	0178230274100000200	₩463,500	전남 광양시 등논 4 길
16	신동술	1968.○.20.	0178210274100003565	₩2,084,0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 1 길
17	윤성길	1975.○.24.	0178200274100006383	₩22,650,000	제주 제주시 은수길
18	양수창	1967.○.14.	0178200274100006022	₩6,427,500	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
19	서순석	1971.○.17.	0178230274100000859	₩10,800,000	전남 광양시 정수길
20	이후정	1989.○.30.	0178230274100000209	₩2,842,8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 2 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☎ 062-457-1596, 159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